

확 인 결 과 통 지 서

사업장명	(주)에스에프에이 / 대구 스마트물류센터 자동화 설비 공급 및 S/W개발		
업종	건설업	전화 팩스	T: 810-1147-2499 F: ✕
소재지	경북 경산시 진량읍 문천리 602		
사업주성명	김영민 대표이사 / 정용식 현장소장		
대상공사종류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<input type="checkbox"/> 연면적 30,000㎡ 이상 건축물 <input type="checkbox"/> 연면적 5,000㎡ 이상 판매시설 등 <input type="checkbox"/> 최대지간 50m 이상 교량 건설 <input type="checkbox"/> 터널 건설 <input type="checkbox"/> 댐 건설 <input type="checkbox"/> 깊이 10m 이상 굴착		
확인기간	2024. 1. 11. (/ 일간)		
확인자	소속(공단) 대구광역본부 건설안전부	직위 과장	성명 이승렬 <i>이승렬</i>
입회자	소속(사업장) (주)에스에프에이	직위 주석	성명 정용식 <i>정용식</i>
확인결과 요약	당 현장 공작물 25m 크 Rack 원문 용로구 Receiving 부 원문들 간헐등이던 작업 관행용임. 처음 관련 작업 시 추락예방 권위 당부드리며, 향후 원문용 기계-서비 용에 대한 계획 수립 권위하여 Risk 예측용관 산과칸도 정복드림 ※ 개선결과 2024. 까지 온라인시스템에 공문으로 제출. ※ 차기확인 예정일 2024. 4. 15.		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확인 결과 **적정함** (불입과 같이 조건부 적정함)을 통지합니다.

2024년 / 월 / 일

	담당	차장	부장	지사장
결 재			전결	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



개선사항 기재서

사업장관리번호	609-81-35227-6	사업장개시번호	923-00-70639-7
발 주 자	크레텍책임 주식회사	공 사 금 액	24,420 백만원
공 사 규 모	높이 40.44m Rock, o) 개선비등	공 정 률	25 %
공 사 시 작 일	'23.2.월	공 사 종 료 일	'24.5월
안 전 보 건 총 괄 책 임 자	(성 명) 정종석 (연락처) 5534-0991	안 전 관 리 자	(성 명) 강성민 (연락처) 610-3118-9664
확 인 시 작 업 공 증	·철근 에크 시공전 추락방지망 설치.		
차 기 확 인 예 정 대형사고위험작업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		예정일

※ 상기 차기 확인 예정인 대형사고 위험작업 예정시기가 현장 사정상 변경될 경우 해당 작업 15일 전까지 공단 통합지원시스템에 변경 입력바랍니다.

안전보건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
1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: 직책, 성명, 휴대폰
2. 개인정보 수집.이용 목적: 업무수행을 위한 연락, 고객만족도 조사, 안전보건정보 송부
3. 보유기간: 공사종료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년간 보존 후 폐기

본인들은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확인업무 수행의 상대방으로서 업무 수행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의 금품·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주고받지 않았습니다. 이 사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서명하여 청렴의무 이행을 확인합니다.

공단 확인자:

이승연 (서명)

사업장 입회자:

김정민 (서명)

※ 확인결과 등 공단 직원의 업무처리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전화 또는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3. 심사결과 「조건부 적정 이유 및 보완사항 기재서」 관련 조건부 사항 이행실태

구 분		해당 항목(번호) 또는 내용
심 사 조건부 사 항	보완완료	<공로> 1. 객 크립관련 양품, 2. 객 크립관련
	향후보완	<진행>
	미보완	3. 안전벽크립하 기성관리 4. 도면감축,

[보완 제출이 필요한 사항]

II.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

※ 주요 가설구조물 공법 변경 시에는 작업 시작 전까지 반드시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의 해당내용을 변경하고 관련 서식*을 작성·이력관리를 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2조 6항(유해·위험 방지계획서 작성·제출 등)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.

* 계획서 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「주요 가설구조물 공법 변경 시 계획서 이력 관리표」

위치 및 세부작업	변 경 내 용*	개선 필요사항
	- 변경 있음.	

* 시행규칙 [별표 10] 제2호 「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중 주요 작성대상」에서 주요 공법 및 작업방법의 변경에 한해 기재

III. 추가적인 유해·위험요인의 존재 여부

위치 및 세부작업	추가 유해·위험요인	추가대책 수립 필요사항

※ 계획서 대상공사에 포함되는 작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유해·위험방지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항 기재

I.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과의 부합여부

1. 안전보건관리계획 이행실태

가. 현황 및 점검사항

안 전 직	직 책	성 명	선임일자	직무교육 이수여부
	안전보건총괄책임자	김종식	23. 2. 2.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이수(신규, 보수)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이수 12-12-20
	안전관리자	장성민	24. 1. 3.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이수(신규, 보수)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이수 23-1-19
	보건관리자		X	<input type="checkbox"/> 이수(신규, 보수)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이수
안전보건총괄책임자 변경 시 계획서 인수.인계 여부			<input type="checkbox"/> 실시	<input type="checkbox"/> 미실시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
※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유해.위험방지계획서와 심사결과서 등을 반드시 인수.인계하고 심사 결과 통지 시 첨부된 『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인수.인계 확인서』를 작성하여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산업안전 보 관 리 비	법정 안전관리비	358,974,000 원	계 상 실 행	과 동 원			
	사용금액 (23. 12. 현재)	142,284,807 원 (사용율 : 40 %)	사용항목 적정여부	적 정			
주요 건설기계 관 리	안전인증	타워 크레인	실 시: / 대 미실시: / 대	리프트	실 시: / 대 미실시: / 대	곤돌라	실 시: / 대 미실시: / 대
	안전검사	타워 크레인	실 시: / 대 미실시: / 대	리프트	실 시: / 대 미실시: / 대	곤돌라	실 시: / 대 미실시: / 대
기 타	기타 관리적 사항 (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회 교육, 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등)	'23. 11. 17. 보사청인계 실시. '23. 11. 17. 항공안전보건 실시					

나. 지적사항

지 적 사 항	개 선 사 항
- 관리직사항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이행됨.	

2.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·위험방지계획 이행실태

위치 및 세부작업	유해·위험요인	개선 필요사항
		<p>- 안전시설물 설치상태 및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양호하며, 상이계량사 이경수원이 전방향을 양호함.</p>

